

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대해 전문건설업 영위,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등을 허용한다

- 입주기업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방문규)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(이하 “산단”)에서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,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, 곤충생산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6일(목)부터 입법예고한다.

전문건설업의 경우,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·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·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허용할 예정이다. 그리고 현재 공장 내 제품 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하여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 또한 곤충생산시설은 곤충가공업체가 곤충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경우에 한해 부대시설로 설치·운영할 수 있게 된다.

그 이외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, 설립 중인 건축물 면적 변경 시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개정하여 입주기업체의 불편과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. 향후에도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	책임자	과 장	이영호 (044-203-4430)
		담당자	사무관	안근영 (044-203-4409)

참고

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

구분	개정 내용	관련 조항
1	부대시설 범위에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, OEM의 위탁 생산제품 판매, 곤충생산시설을 포함	제2조제8호 나목 개정, 라목·마목 신설
2	임차공장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 또는 건축면적이 증가한 경우, 공장등록사항을 변경 ※ (현행) 공장증설 승인으로 처리	제11조제1항 개정
3	시·군·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공장 등록시 해당 사업내용이 첨단업종에 해당하는지를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	제15조제2항 신설
4	시행령 개정(23.4월)으로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조항 삭제	제26조의2 삭제
5	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기준을 산단 면적 5만㎡ 이상 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 4개 이상으로 완화 ※ (현행) 산단면적 15만㎡이상, 입주기업체 수 10개 이상	제28조제2호 개정
6	법 조항이 변경됨(제33조제5항 →제33조제7항)에 따라 시행규칙 조문도 이에 따라 수정	제31조제1항 개정
7	“영 제18조의2제1항”이 “영 제18조의2”로 변경되어 이를 인용한 시행규칙 조문을 현행화, 설립 중인 건축물에서 공장건축면적이 변경될 경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서 변경사항을 함께 제출 ※ (현행) 입주계약 변경사항으로 처리	제35조제1항제4호 개정